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*야구(SAB ONERS) 동아리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① 본 동아리의 명칭은 “숭실대학교 야구부 동아리” 혹은 “SAB(이하 “본 동아리”라 한다)이라 칭하고, 영문으로 Soongsil Amateur Baseball으로 표기 한다.

**제 2조 [목적]**

본 동아리는 야구를 통한 자기계발, 야구능력향상 그리고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조 [동아리 소재]**

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학생회관 226호

**제 4조**

본 동아리는 숭실대학교 학생에 의해서 운영된다.

**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 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① 임원진은 회장, 감독으로 정의한다.

② 임원진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.

**제 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① 임원은 숭실대학교 학부생으로 선출한다.

② 차기 감독과 회장은 매학기 종강총회 때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다.

**제 3조 [임원진]**

① 회장은 본 동아리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.

② 회장의 동기들은 회장의 업무를 보필한다.

③ 모든 동아리원은 동아리 행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.

회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본 동아리의 회계업무 및 행정업무의 감사

2.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 이를 회의에 부친다.

3. 매학기 회계를 종강총회에 보고하고 차기 회장에게 인수한다.

④ 감독은 동아리 활동 진행을 수행한다.

**제 4조 [집행부]**

① 집행부는 임원진과 집행부원으로 구성되며, 집행부원은 임원진이 선임한다.

② 집행부는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.

1. 비상회의 의견 개진권

2. 비상회의 의결사항 투표권

③ 집행부의 의결은 집행부 회의를 통해 진행한다.

**제 5조 [집행부 회의]**

① 집행부 회의는 집행부와 학기당 1회 이상 진행한다.

② 집행부 회의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.

**제 3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 종류 및 자격]**

① 회원은 YB, OB, 신입회원, 매니저로 구분한다.

② 회원은 숭실대 학부생, 교환학생, 졸업생으로 구분한다. (매니저를 제외한 전산원 학부생은 활동은 할 수 있으나, AUBL 및 기타 전국대회 선수등록은 불가하다.)

③ 본 동아리에서 야구를 하고 싶은 모든 학생은 신입회원이 될 수 있다.

④ 본 동아리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신입회원은 YB가 될 수 있다.

⑤ 본 동아리 소속으로 졸업한 회원은 OB가 될 수 있다.

⑥ 선수는 경기에 출전하며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한다. 각종 행사 시 서로를 도와 행사를 준비한다. 매니저는 경기내용을 기록하고 사진촬영 및 SNS 활동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 2조 [회원의 권리]**

① 회원은 본 회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와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진다.

②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무 등 제7조의 의무를 1학기 이상 해태하는 경우 임원은 제①항의 권리를 정지시킨다.

**제 3조 [회원의 의무]**

① 회원은 본 동아리의 회칙과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회원은 총회 및 임원의 의결사항과 각종 행사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③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갖는다.

**제 3조의 2 [회비]**

① 회비는 본 동아리 계좌에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YB의 회비는 학기 시작 전에 납부한다.

③ 신입회원의 경우 처음 등록한 학기의 회비는 받지 않는다. 다음 학기는 1만원의 회비를 받는다.

④ 납부한 회비는 반납이 불가하다.

⑤ 회비는 기본 5만원이고 임원진 결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.

**제 4조 [자격상실]**
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, 탈퇴하는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② 본 동아리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행동하거나 본 동아리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동아리원 전체 인원 3분의2 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
**제 5조 [동아리원의 탈퇴]**

제 13 조(동아리원의 탈퇴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강제 탈퇴할 수 있다.

1. 본 동아리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
2. 임원 간의 분쟁 ․ 회계부정 또는 이에 준하는 부당행위

**제 4장 사업**

본 동아리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수행한다.

1. 매주 정기 훈련

2. 행사(컨텐츠, 개강총회, 종강총회, 홈커밍데이, 야구인의 밤, 학교 축제)

3. 전국대학아마야구리그(AUBL) 참가

4. 기타 전국대회 참가

**제 5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조 [등록]**

①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

**제 6장 부칙**

**제 1조 [회칙 발효]**

①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

초판 [0000.00.00]

개정 1판 [0000.00.00]

**제 2조 [회칙 개정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어야 한다.